

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9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3월 일

발 의 자 : 김은영 의원

1. 제안이유

- 사회적 약자인 하남시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정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1년 3월 5일 ~ 3월 10일

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6. 부서협의 결과 : 특이사항 없음

하남시 조례 제 호

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6호 “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” 을 삭제한다.

제5조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
8.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
9. 장애인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인한 성인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지원사업) (생략)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지원사업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<삭 제></u></p> <p>7. <u>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</u></p> <p>8. <u>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</u></p> <p>9. <u>장애인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인한 성인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</u></p>